

삼성전기 기업지배구조 헌장
Samsung Electro-Mechanics
Corporate Governance Charter

제 1장 총 칙

제 1조 (삼성전기 기업구조 기본정신)

삼성전기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

우리는 모두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최고품질의 실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노력할 때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삼성전기 기업지배구조 개선 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 2장 고객

제 2조 (고객의 정의)

우리는 삼성전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즉, 임직원·협력사·경쟁사·주주·구매자 등을 우리의 고객으로 정의한다.

제 3조 (고객 만족의 추구)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객과 함께 신가치 창출의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제 3장 주주

제 4조 (주주의 권리)

주주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익 분배 참여권 등의 자익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의 공익권
- 정기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제 5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하며 특히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만약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통 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와 특별한 주주를 제외하고는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주주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거래(부당 내부자 거래, 자기 거래 등)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7조 (주주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는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고 주주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을 적극 공개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일부 특정 주주에게만 제공하지 않으며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4장 이 사 회

제 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실질적인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경영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에 대한 전략과 목표 수립

- 경영에 대한 감독과 성과의 평가
- 사업계획, 예산 등 중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평가와 승인
-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 심의 및 검토, 승인
- 최고 경영자 선발 및 평가, 보상
- 이사회 의장 선정 등 이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 경영 목적의 변경 승인
- 주요 자본 지출 및 합병 등 중요 변동사항 감독
- 회계 및 주요 기업행위에 관한 감시, 검토, 승인
- 법령, 내규, 윤리 규정 등 제 규정 준수의 감독 등

제 9조 (이사의 자격)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며 올바르게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 지혜, 정직성 및 봉사심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야 하며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서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기업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에 대해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는 경우는 제 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의 충실하고 성실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각 이사들의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현황, 주요 경력 및 겸직현황 등을 적절하게 공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의 유치를 위해 기업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 11조 (이사의 평가 및 보상)

경영진과 사외이사, 이사회 등의 경영 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

결과는 보수와 재선임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다. 특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된 범위 내에서 이사보상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2조 (사외이사의 추천 및 선임)

사외 이사는 공정하게 추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외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선임 사외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추천된 이사 후보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사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외 이사는 법령(증권거래법 191의16③, 54의5④9호, 동법 시행령37의6③3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될 수 없으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진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 퇴직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전직 임직원
- 회사, 최고 경영자,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 당사의 임원이 사외 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피고용인과 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 13조 (사외 이사의 권한과 의무)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는 회사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인적·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것에 성실히 응한다.

또한 사외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야 하며 이사회 참가 의무가 있고 이사회 참가 전 관련 자료를 성실히 검토한 후 이사회에 참가해야 한다.

제 14조 (위원회)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상설, 비상설 위원회를 두어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상설 위원회 : 집행 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비상설 위원회 : 이사 보상 위원회, 투자 심의 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고 그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장 감사 기구

제 15조 (내부 감사기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설치하며 경영진 및 지배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원 이사회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소속위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주요 활동 내역 및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6조 (외부 감사인의 선임)

외부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정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회사의 감사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 17조 (외부 감사인의 책임과 의무)

외부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정보가 그 관계인들에게 공정하게 전달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경영진, 회사 및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외부 감사인은 자신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실한 회계감사와 그로부터 발생한 정보 이용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장 회계자료 처리 및 경영 감시

제 18조 (회계 처리 기준)

회계 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국내의 회계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하며,

해외에 관련된 것일 경우 각 국가의 회계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제 19조 (이해 관계자의 경영 감시 참여)

종업원의 경영 참가 형태와 그 수준은 회사가 건전한 활동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도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20조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회사는 투자자, 주주,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에게 기업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 신속·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하고 이를 관련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한 회사는 공시 책임자를 지정하며 정보 전달체계를 갖추어 기업의 중요 정보가 담당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서 이사회를 비롯한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주에게 즉시 공개 하며, 의사결정 시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조력자를 이용, 의사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 7장 이해 관계자

제 21조 (이해 관계자의 권리보호)

회사는 법령과 계약에 의한 이해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해당 이해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제 22조 (채권자와 종업원 권리 보호)

회사는 합병, 감자 등 채권자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준수 한다. 또한 회사는 채권 회수 가능성, 채권자 채권 순위 등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알린다.

또한 회사는 노동 3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에 노력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2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